

『 가평군시설관리공단 한석봉체육관 』 수상안전요원 단시간근로자 채용 공고

가평군시설관리공단에서 함께 근무할 참신하고 의욕적인 수상안전요원 단시간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합니다.

2026년 5월 26일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근무조건

근무장소	인원	채용기간	근무일	근로시간	근무시간	급여
한석봉 체육관	1명	채용일로부터 ~ 2026. 12. 31.	월, 화 목, 금	일 3시간 / 주 12시간	09:00 ~ 12:00 또는 14:00 ~ 17:00	시간당 20,000원

※ 근무시간은 합격자 일정에 맞게 조정 가능

※ 사업장 사정에 따라 근무일, 휴일 및 근무시간은 변경(조정)될 수 있음.

■ 임금지급: 월급(월 1회, 익월 10일 이내 지급)

2. 채용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응시 자격기준

구 분	자격기준
공통	「아래 자격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 연 령: 채용예정일 기준 만18세 이상 만 65세 이하 - 자격사항: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23조(별표 6)에서 정한 수상안전요원 자격을 가진 사람

[수상안전요원 자격]

- (가) 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수영장업협회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취득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2급 이상)
- (나)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른 수상구조사
- (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취득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
- (라)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자격
- (마)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취득하는 「자격기본법」에 따른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

■ 결격 사유

공단 기간제근로자 관리운영 시행내규 제11조(기간제 근로자의 자격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지방공기업법 제60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3. 공단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지방공기업법 제60조 제1항 제3호 관련)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점사항 제출서류(해당자에 한하여 서류심사 시 제출)

구 분	제출서류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원본제출, 보훈관청 발급)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등록증명서(원본제출, 시/군/구 민원실 또는 주민센터 발급)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확인서(원본제출, 통일부 또는 시/군/구 민원실 발급)
다문화가족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중 한 가지 (다문화가족 구성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원본 제출)
의상자 및 의사·상자 배우자 및 자녀	본인- 의상자증명서, 배우자 및 자녀 - 의사·상자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제출, 시/군/구 민원실 발급)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원본제출, 온라인 정부24, 오프라인 시/군/구 민원실 발급)
차상위 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서(원본제출, 온라인 복지로, 오프라인 시/군/구 민원실 발급)

※ 2가지 이상의 가산대상에 해당될 경우 그중 유리한 가산점수 1가지만 적용됩니다.

■ 직원채용 시험가산점수 기준

구 분	대 상	가산점수 및 부가점수	비 고
취업보호 대상자 및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및 보호 대상자	각 개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 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 다 가산 •1인이 1개 이상의 가산대상에 해 당될 경우 가산점이 높은 1개만 적용함.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 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 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함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 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전형별 만점의 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의사자 및 배우자 또는 자녀 중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사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사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	전형별 만점의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사회적 약자 및 취업취약계층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전형별 만점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 취업보호 대상자 및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은 모집 단위(직렬, 직급)별 선발 예정 인원이 4명 이상일 경우에만 가점 부여함. 단, 예외적으로 선발 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라도 응시자 수가 채용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을 적용한 점수로 평가.(국가유공자 등 채용시험 가점제도 관련 가이드라인 준용)

3. 채용일정

추진기간	추진내용	비고
'26. 6. 1. ~ 6. 8.	원서 접수	방문접수, 우편, e-mail
'26. 6. 9.	서류접수 결과발표, 면접시험 일정공고	공단 홈페이지, 클린아이 등
'26. 6. 11.	서류전형 적격심사: 13:40(예정)	한석봉체육관 지하1층 회의실
	면접시험: 14:00(예정)	한석봉체육관 지하1층 회의실
'26. 6. 15.	최종 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발표	공단 홈페이지, 클린아이 등
'26. 6. 22.	임용 및 근무시작	

※ 추진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원서 접수

구 분	내 용
접수기간	<input type="checkbox"/> 2026. 6. 1.(월). ~ 6. 8.(월) / 09:00 ~ 18:00
접수방법	<input type="checkbox"/> 방문, 우편, E-mail(blueddol@gpfmc.or.kr) 접수 / 택 1
접 수 처	<input type="checkbox"/>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문화로 153 한석봉체육관 1층 사무실 (우편 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18시 전 도착 한함.) * 이메일 접수의 경우 원서 출력 후 서명하여 JPG 또는 PDF 파일로 접수(필)
제출서류	<input type="checkbox"/> 원서접수 기간 내 제출서류 <input type="checkbox"/> 응시원서,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input type="checkbox"/> 면접(당일) 시 구비 서류: 응시표, 신분증

※ 구비서류는 반드시 [공단 소정\(채용공고\)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 공단 홈페이지(www.gpfmc.or.kr) → 알림방 → 채용정보 → 한석봉체육관 수상안전요원 단시간근로자 채용공고

5. 채용절차 및 방법

■ 채용절차

1) 1차 서류심사: 응시 자격 기준 부합 여부 심사(적격 여부)

* 제출서류: 가점서류(해당자에 한함, 붙임 참조)

2) 2차 면접심사: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3) 면접심사 평가항목: 100점 / 각 항목 당 20점 만점

평가항목	평가 점수	심사 기준					비고
		매우우수 (17~20)	우수 (13~16)	보통 (9~12)	미흡 (5~8)	매우미흡 (1~4)	
합계	100						
고객지향 및 공익추구 자세	20						
창의성	20						
예의·품행 및 성실성	20						
문제파악 및 해결능력	20						
직무 전문성	20						

각 위원이 평가한 점수의 평균이 보통(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항목에 대하여 미흡(8점) 이하로 평가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 동점자 발생 시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10조(합격기준) 제3항에 따름

※ 주의사항: 블라인드 면접으로 응시자의 개인 신상 발언 금지(친·인척 중 유명인사 또는 고위직, 본인에게 유리한 성장배경, 가족관계, 학력, 사회경력 등 의도적 전달 행위)

■ 합격자 결정

구 분	내 용
발표일자	□ 2026. 6. 15.(월)
합격결정	□ 면접시험 결과(100% 반영, 동점자 발생 시 가산점 반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동점자 처리 기준	□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10조 제3항 기준에 따름
비 고	□ 채용 결과 발표 후 채용 포기, 결격사유 발생 등의 사유로 결원 발생 시 예비 합격자 제도에 의한 추가 채용

■ 예비 합격자 제도 운영

구 분	내 용
운영근거	<input type="checkbox"/> 공단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10조의2(예비합격자 제도)
운영목적	<input type="checkbox"/> 신속한 인원 보충 및 결원을 최소화
예비합격자 임용 결정	<input type="checkbox"/> 차 순위 합격자부터 점수 순으로 예비합격자를 결정하고, 공단의 내·외부 운영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임용 여부를 결정함.
유효기간	<input type="checkbox"/>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개월
예비합격 인원	<input type="checkbox"/> 예정인원의 2배수(상위 2명)

■ 합격자 발표: 공단 홈페이지(www.gpfmc.or.kr)채용 공고 발표

※ 합격자 및 불합격자 개별 문자 또는 유선 통보 예정.

※ 근로계약 체결 시 제출서류: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근로시작일: 2026. 6. 22.(월) 예정

6. 고용의 해고

■ 최종 합격 후 근무태도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관리운영시행내규 제47조(고용의 해고)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용의 해고가 될 수 있음.

1.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한 자로서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고 개선의 정이 없다고 판단될 때
2. 출·퇴근 시간 및 근무태도의 불량 또는 기타 사유로 3회 이상 지적 당하거나 계속하여 3일 이상 무단결근 또는 1월 결근일수 합계가 7일 이상인 때
3. 고의 또는 과실로 공단의 시설물 또는 기구류를 파괴하거나 사업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4. 고의 또는 과실로 사고를 발생시켜 공단의 운영에 손해를 끼친 때
5. 경력을 낮게 또는 높게 사칭하여 입사하거나 직위(급)을 사칭한 때
6. 사회통념상 신체·정신상의 질병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7. 공금의 횡령·유용 또는 향응을 받거나 배임한 때(금액의 제한은 없음)
8. 협박 또는 폭행으로 상사 또는 동료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때
9. 허가 없이 공단 안에서 불온문서의 배부, 시위·집회 등에 참여한 때
10. 공단의 비밀을 누설하여 손해를 끼친 때

11.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휴직기간 1년 이내에 직장 복귀를 할 수 없게 된 때
12.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개선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 때
13. 근무지변경 등 업무명령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복종 한 때
14. 이사장의 승인 없이 타 사업장에서 일을 한 때
15. 형사상 유죄확정판결을 받았을 때
16. 정기 또는 임시 건강진단결과 취업의 부적격자로 판정된 때
17. 사업운영상 부득이 감원을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
18. 공단 취업규정 제11조를 위반 하였을 때
19.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7. 기타 유의사항

- 인사청탁, 제출서류의 위변조, 허위사실기재 등 비위사실이 판명될 경우 해당 응시자의 합격을 즉시 취소 후 적발된 날로부터 5년 간 공단 채용시험 응시가 제한됩니다.
- 제출된 서류의 기재·착오·누락 또는 연락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며, 접수마감 후 제출서류는 일체 변경·추가보완 등이 불가합니다.
- 해당분야 적격자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결격사유조회 결과 등에 따라 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되고, 예비합격자 순번에 따라 추가합격 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 후 반환합니다. 또한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불가피한 사유로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전까지 변경된 사항을 공고 합니다.
- 채용비리 방지를 위해 우리공단에 재직하고 있는 임직원과 친인척(배우자, 4촌이내 혈족인척)인 합격 인원은 공단 홈페이지 등에 공개됩니다.
- 본 공고 사항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가평군시설관리공단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 기타문의: 가평군시설관리공단 생활체육팀 채용담당자(☎031-8078-8016)